

2025 박문각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본서 정오표(초판기준)

(2024.12.26. 기준 법 개정 반영, 강경구 교수)

페이지	개정 (수정 전)	개정(수정 후)
제2편 공동주택관리법		
p213	밑 9째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700세대) 이상
p214	위 6째줄	4).....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충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
	중 간	<p>5)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영 제21조의3))</p> <p>1. 법 제20조 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충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충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충간소음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이하 이 조에서 “충간소음예방등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② 교육내용 ③ 교육대상자 ④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2. 충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충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p> <p>3. 충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p> <p>4. 충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충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충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충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p> <p>5. 충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충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 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p> <p>6. 충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충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충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p>
p220	밑 9째줄	다음의 관리비 등을 1)의 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 ⇨ 다음의 관리비 등을 다음 (2)의 방법
제3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p304	위 7째줄	<p>4 단기민간임대주택</p> <p>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의2).</p>
p304~ p305		기존 4 ~ 10 ⇨ 기존 5 ~ 11

p307	중간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p312	중간 박스	2.제12호부터 14호까지 ⇨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밑 5째줄제12호부터 14호까지 ⇨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p314	중간 박스 12의2 신설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①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 ②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p317	중간 4.(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style="background-color: #f08080;"> <th colspan="2">주택임대관리업 구분</th> <th>자기관리형</th> <th>위탁관리형</th> </tr> <tr> <td colspan="2">1. 자본금</td> <td>2억원 이상</td> <td>1억원 이상</td> </tr> </table>	주택임대관리업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1.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주택임대관리업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1.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p320	중간 박스 8. (1)	6. 다음 7.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p338	중간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p340	위 9째줄 박스	3.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6년								
p341	위 11째줄 4. (2)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밑 8째줄 박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p348	위 11째줄 신설	(3) 보증회사는 1.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 제1항 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1.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9조 제8항). (4) 보증회사는 (3)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49조 제9항).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598	위 10째줄 (4) 1)	1) 토지등소유자는 ⇨ 1) 토지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중간 박스	1.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598	중간 박스	기존 1,2,3 ⇨ 2,3,4
p599	위 9째줄	(5) 1) 토지등소유자(다음의 5.의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밑 3째줄	시장·군수는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p601	위 3째줄	<p>(8)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p> <p>1) 시장·군수등의 재건축진단 실시</p> <p>① 시장·군수등은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p> <p>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법 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p>2) 재건축진단대상 건축물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3항).</p> <p>3) 재건축진단의 요청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영 제10조 제1항).</p>
p602	상단	<p>4) 재건축진단요청이 반려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아래 5)에 따른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앞의 (8)의 1)의 ②의 1.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영 제10조 제2항).</p> <p>5) 재건축진단의 실시 ①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4항, 영 제10조 제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② 현지조사 의뢰: 시장·군수등은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0조 제5항).</p> <p>③ 재건축진단의 구분: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영 제10조 제6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안전성 평가: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재건축진단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위의 1.외의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재건축진단 <p>④ ①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5항).</p> <p>⑤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법 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6항).</p>

p603	상 단	<p>⑥ 재건축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2조 제7항).</p> <p>6) 재건축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p> <p>① ①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2항).</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3항).</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② 및 ③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 제13조 제4항).</p>		
p607	중간 박스 2.	<p>2.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본다)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p>		
p614	맨 밑 신설	<p>4)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앞의 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4항).</p>		
p615	밑 8째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탁업자</td> <td style="padding: 5px;">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101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td> </tr> </table>	신탁업자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101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신탁업자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101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p616	밑 7) 다음 8) 신설	<p>8) 협약등 체결</p> <p>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7항).</p>		

p620	중 간	<p>(1) 추진위원회 구성</p> <p>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제1항).</p> <p>.....</p> <p>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법 제31조 제2항).</p> <p>1.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p> <p>2.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p> <p>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p> <p>③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p> <p>④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p>
	밑 4째줄(법 제31조 제2항) ⇨ (법 제31조 제3항).
	맨 밑(법 제31조 제3항) ⇨(법 제31조 제6항).
p621	맨 위 신설	<p>(3) 재승인</p> <p>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1)의 ①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 제31조 제4항).</p> <p>② ①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법 제31조 제5항).</p>
p623	밑 8째줄	...사항을 첨부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624	위 5째줄	...사항을 첨부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625	위 5째줄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를 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 제1항 제8호 단서, 제31조 제3항 단서 및 제47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p625	밑 9째줄	(3) 검인 또는 확인 동의서 사용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 동의서 ”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 31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 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 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법 제36조 제3항).
	밑 2째줄	앞의 (1), (2) 및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요청에 따른 동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및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6조 제4항).
p626	<날개>	5.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p627	<날개> 맨 위 상단 신설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1.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②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③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2. 1.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1.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② 1.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p632	위 5째줄	③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제45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에 따른 의결권 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제4항).
	위 10째줄 신설	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1.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③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3.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633	중간 박스 신설	<p>3)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p> <p>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법 제45조 제6항).</p> <p>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대리인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p> <p>②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7항).</p> <p>③ ①의 1.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 제1항 단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8항).</p>
	중 간	<p>4) 조합원의 직접 출석 비율</p> <p>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10항).</p> <p>②.....(법 제45조 제8항) 내용 전체 삭제</p> <p>5)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p> <p>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법 제45조 제11항).</p>
	날 개	<p>2. 조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9항).</p>
p634	밑 4째줄	<p>(1) 구성</p> <p>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5항).</p>
p637	〈날개〉 밑 3째줄	<p>〈날개〉 11. 다음 삽입</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p> <p>11의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p> <p>11의3.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p> <p>12. 그 밖에 사·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p>